



학술논문투고 규정

제정일	2014. 1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연구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 논문집 발간을 위한 학술 논문 투고지침을 규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투고자격) 논문의 투고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기한 내에 논문투고신청서[별지 제1호]서식 및 논문을 제출한 자로 한다.

제 3조 (투고내용) 본교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타 학회지 및 공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 논문으로, 전공 및 대학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창의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.

제 4조 (투고원칙) ① 연구논문은 단독 연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의 성격상 부득이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교원이 주 저자가 되어야 한다.

② 논문투고 편수는 1인 1편으로 제한한다.

③ 위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, A4용지 15매 내외로 한다.

제 5조 (투고일자) 투고는 원본 1부와 원고를 저장한 파일을 당해연도 논문집 출판 계획에 따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원고작성 방법) 원고 작성 방법은 센터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원고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.

제 7조 (원고의 게재) 원고의 게재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인쇄를 요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.

제 8조 (원고의 별쇄) 별쇄는 논문 1건당 20부 내외로 증정하고 그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.

제 9조 (논문편집 일정) 논문편집일정은 센터장이 결정하여 통보한다.

제10조 (세부사항) 본 투고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1조 (원고의 심의 및 채택) 투고된 원고는 2인(외부심사 2인)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,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,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.

제12조 (논문심사료) 논문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지급한다.

제13조 (기타) 그 외의 사항은 일반 투고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】

논문 투고 신청서